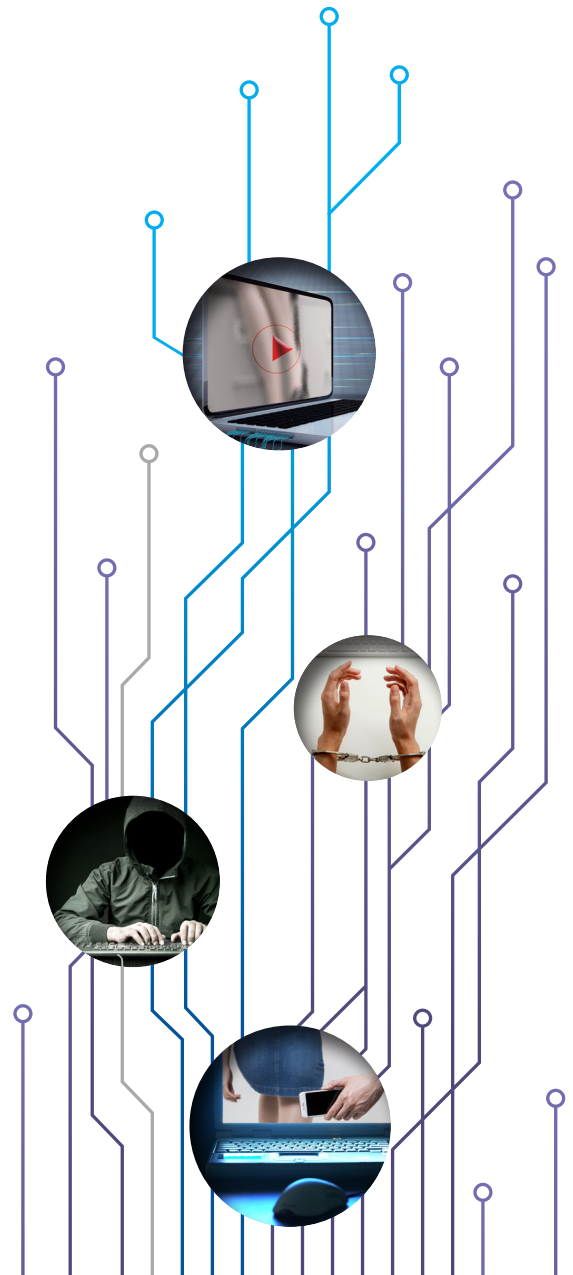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 공동 세미나

2018년 9월 11일(화) 14:00~18:00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국회도서관 421호)



PROGRAM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 공동 세미나

14:00~14:25 개회식

사회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팀장

개회사 |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
인사말 | **문화상** 국회의장
환영사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경욱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삼화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14:30~16:00 [발제] 디지털성범죄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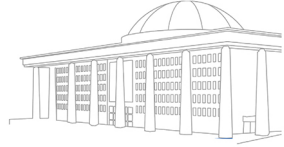
좌장 **전해정**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발제 1 | 불법촬영 편파수사 시위의 의미와 과제
서승희 대표(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발제 2 | 온라인상 불법촬영물 유포 방지를 위한 개선과제
최진응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발제 3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
조주은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16:10~17:40 라운드테이블

토론 | **조윤오** 교수(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김현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최종상 과장(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최은희 국장(방송통신심의회위원회 통신심의국)
변혜정 원장(한국여성인권진흥원)

CONTENTS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 공동 세미나

개회식

개회사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	i
환영사 문희상 국회의장	iii
인사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v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vii
민경욱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ix
김삼화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xi

[발 제] 디지털성범죄 대응방안

발 제

1. 불법촬영 편파수사 시위의 의미와 과제	1
서승희 대표(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2. 온라인상 불법촬영물 유포 방지를 위한 개선과제	11
최진응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	25
조주은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토 론] 라운드테이블

토 론

조윤오 교수(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43
김현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45
최종상 과장(경찰청 사이버수사과)	48
최은희 국장(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국)	52
변혜정 원장(한국여성인권진흥원)	59

개회사



이 내 영
국회입법조사처장

안녕하십니까? 국회입법조사처장 이내영입니다.

먼저 오늘 이 공동세미나를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준비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님,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님,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공동세미나의 좌장을 맡아주신 국민대학교 전해정 교수님을 비롯해 발표와 토론을 함께하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전문가, 그리고 정부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해화역과 광화문에 수만 명이 모여 불법 촬영 편파수사사건에 대하여 항의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직장, 집, 숙박업소, 공중화장실 등 일상 생활공간에서 여성들이 몰래 불법 촬영되어 그 촬영물이 인터넷과 SNS 공간 속에서 빠른 속도로 유통되었던 점, 가해자 수사에 있어서도 공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한 불법 촬영과 인터넷상 유통, 동의하에 촬영한 성적 정보의 비동의 유포 등을 포괄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제14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여성가족부는 각각 범죄 정보 삭제, 범죄 수사 및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IT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진화하고 있는 불법 촬영물의 유형, 범죄 정보의 상업화 속도 등을 제대로 규율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

서 오늘 이 공동세미나를 개최해주신 의원님들께서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정책의 미비한 점을 입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셨거나 준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정책토론회가 각계의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데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적 대안이 활발하게 모색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년 9월 11일
국회입법조사처장 **이내영**

환영사



문희상
국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문희상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오늘 개최되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안 모색 공동세미나」는 대단히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진선미·한정애·김삼화·민경욱 국회의원님과 국회입법조사처 이내영 처장님을 비롯한 행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분들과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성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던 성범죄가 온라인으로 확산됨으로써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특유의 빠른 전파성과 영구삭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26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디지털 성범죄 수사력 부족과 피해자 지원체계 미비 등 정책과 제도개선에 대한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세미나에서 국회와 정부·시민단체 등 전문가 분들이 모여 다각도로 대응 방안을 논의 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심도 깊은 토론의 장을 통해 수렴된 의견들이 제도와 정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11일

국회의장 **문희상**



진 선 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입니다.

오늘 이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한정애 의원님, 민경욱 의원님, 김삼화 의원님과 이 내영 국회 입법조사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또 세미나를 이끌어주실 전해 정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님을 비롯,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의 노력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 믿습니다.

최근 동의 없이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을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의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2011년 단 341건에 불과했던 디지털성범죄는 2017년에는 6,465건으로 증가해 무려 20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성범죄는 음란물에 지인이나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뒤 유포하는 ‘지인능욕’ 범죄와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포르노’ 범죄로 진화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의 대응은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지난 해 9월 26일 발표된 정부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과 더불어 20대 국회에서도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들이 수십 건 이상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정책이 미흡하거나 대부분 법률안들이 국회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불법촬영범죄 규탄 시위가 수차례 개최되는 등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디지털성범죄 실태와 더불어 각종 대책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

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해볼 것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한정애 의원님, 민경욱 의원님, 김삼화 의원님과 함께 디지털성범죄로부터 국민들이 보다 더 안전해질 수 있는 제도적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여야가 마음을 모아 개최한 이 세미나가 성평등한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11일

국회의원 **진선미**



한 정 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한정애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의미 있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 공동 세미나」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젠더폭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고, 그동안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어 왔던 젠더 문제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스토킹,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각종 젠더폭력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9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국회 또한 관련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사한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촬영과 유포의 수단과 방법은 점차 발전하고 있지만, 인터넷이라는 매체 특성상 그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더욱 심각한 범죄가 되고 있습니다. 웹에 업로드된 영상은 한 사이트에서 삭제하더라도 다운로드한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유포될 가능성이 남아 있어 피해자의 삶은 철저하게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접촉이 없는 성폭력은 다소 사소하다는 생각과 침묵 속에서 고통 받는 피해자의 삶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웹하드, 토렌트 등의 사이트를 통해 유포된 사진과 영상은 자발적인 ‘참여’와 ‘놀이’로 발전해 손쉬운 돈벌이의 장이 되어 2, 3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지인합성’, ‘지인능욕’이라는 보다 강한 젠더 권력이 행사되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도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젠더 권력을 통해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에도, SNS에 합성 사진을 유포하고 이름과 학교·직장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의도적으로 게시하며 이를 즐겼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가 가벼운 놀이 대상으로 취급되는 끔찍한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피해자들이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영역으로 남지 않도록 제대로 된 수사와 함께 체계적인 피해 방지 방안도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 공론화와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해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의견으로 함께해주시면 현실적인 방안 마련에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저 역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과제와 관련 제도 정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세미나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공동 주최해주신 진선미·민경욱·김삼화 의원님과 국회입법조사처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미 있는 논의에 함께해주신 발제자, 토론자 분들을 포함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9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정애**

인사말



민 경 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 연수구를 출신 민경옥 의원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외빈 및 토론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 공동세미나’를 공동개최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합니다. 행사 준비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 처장님을 비롯하여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토론회를 주최해주신 진선미, 한정애, 김삼화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고견을 들려주실 전해정 교수님을 비롯한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상으로 정보가 유통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성폭력과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온라인의 특성상 한 번 정보가 흐르기 시작하면 빠른 속도로 퍼짐과 동시에, 삭제를 한다고 해도 파일명을 바꾸거나 재가공해서 유통되는 등 영구삭제가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디지털성범죄정보 관련 신고는 2016년 8,456건에서 2017년에는 21.6%가 증가한 1만286건, 2018년 5월까지의 작년의 67.9%에 달하는 6,98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몰카 등 불법영상물을 직접 삭제한 건수는 전체의 1%에 불과한 79건으로, 99%에 달하는 불법영상물 대부분이 규제가 강한 국내법을 피해 해외서버에서

유통되고 있고, 해외서버는 직접 삭제가 어려워 접속차단 조치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번 유출된 자료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지만, 정작 가해자는 중대한 성범죄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의 사진이나 인터넷에서 습득한 일반인 사진, 연예인 사진 등을 음란물에 합성한 뒤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이른바 ‘지인능욕’범죄가 대학가까지 덮쳤습니다.

실제로 포털 사이트에 ‘지인능욕’을 검색하면 돈을 받고 사진을 합성해주겠다는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지만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비방 및 명예훼손에 준하는 처벌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지난 2월, ‘지인능욕’범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습니다.

가벼운 생각으로 저지르는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는 평생을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릇된 성 인식 속에 발생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심각한 성범죄이자 인권침해 행위로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만큼 보다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열리는 세미나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의로운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치열하게 고민해 정책적 방안을 세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 공동세미나’ 개최를 의미 깊게 생각하며,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 위해 함께해주신 진선미, 한정애, 김삼화 의원님과 국회입법조사처에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11일

국회의원 **민경욱**



김삼화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김삼화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 공동 세미나>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정성껏 준비한 발제와 토론으로 세미나의 깊이를 더해 주실 패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진선미·한정애·민경욱 의원님,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공론의 장을 마련하게 된 점에 대해서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기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의 익명성과 강한 전파성을 이용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댓글을 비롯하여 몰래카메라, 음란 합성물, 성폭력 동영상 등의 불법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 행위’ 발생건수는 2011년 1,523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약 3.4배가 증가했으며, 검거건수 역시 2011년 1,332건에서 2016년 4,904건으로 약 3.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디지털성범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인터넷 특성상 불법 영상물의 완전한 삭제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는 무한한 상처와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재발방지 의무를 진 국가와 사회의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기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디지털성범죄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번져가고 있어 피해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제라도 사회적 윤리의식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디지털성범죄가 오프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만큼의 악성범죄이자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인식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무분별한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타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된 경우 성폭력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6년 발의한 바 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 공동 세미나>를 통해 온라인상 불법촬영물 유포 방지를 위한 개선과제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의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생산적인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세미나를 계기로 제가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며, 저 역시 오늘 세미나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정책과 법안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 공동 세미나>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디지털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11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김삼화

발제1

불법촬영 편파수사 시위의 의미와 과제

서승희 대표(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의 의미와 과제

서승희 대표(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1 |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의 배경

‘위마드’라는 여초커뮤니티에 홍대 크로키모텔의 피해촬영물이 유포되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여성들은 절망과 분노를 느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수많은 폭력과 범죄들에 더 이상 일일이 화내기도 벅찼던 그간의 삶에 대한 허탈함과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함께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이 있었다. 여성이기만 하면 누구나 그곳에서 죽을 수 있었다. 이 사건은 많은 여성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여성들은 강남역에 뛰쳐나와 목소리를 냈다. 우리 일상에 스며든 여성폭력을 보라고,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마주하고 있다고. 이제는 그만 안전하고 싶고,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외쳤다. 그러나 2018년에도 여성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못했다. 여성들은 아직도 어느 날 갑자기 여성폭력의 대상이 되어 살해당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살해의 형태는 더 다양해졌다.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에서도, 여성이기만 하면 누구나 죽을 수 있는 공간은 더욱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성적촬영물 비동의 유포의 피해자가 되어 ‘국산 야동’으로 사고 팔리지 않기를 바라게 되었다.

여성들은 조심하고, 또 조심해왔다. 피해를 당해도 경찰이나 공권력을 믿기 어려우니, 애초에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작년 여성의 전화에서는 경찰에 의한 2차 가해 사례를 모아 ‘#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이라는 사례집을 만들었을 정도이다. 그러나 조심해도 소용없으며 이런 세상에선 경찰에 찾아가야 하는 여성이 끊임없이 생겨난다는 것을 인식했기에, 여성들은 드디어 조심하는 일을 멈추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하게 되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부딪히게 된 것이다.

2년 전, 경찰과 검찰은 ‘여성혐오’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으나, 강남역 살인사건은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발표했다. 살인범이 여성과 교제를 한 적이 있고 여성을 성적대

상화한 포르노를 본적이 있기 때문에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말이다. 2년이 지나, 여성들은 그랬던 사회가 흥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범죄자에게 남성혐오가 목적이냐고 질문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런 세상에 우리의 삶을 기대야 한다는 것이 여성들에게 어떤 절망이 되는지 알아야 우리는 해화역 시위의 배경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수사기관과 정부는 여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불씨가 자리 잡았는지 모르고 있다.

편파수사 문제로 논란이 되었을 당시 경찰청장은 경찰의 불법촬영 사건 검거율이 96%이며 편파수사가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피해자가 신고를 해도 경미하다거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건 조차 되지 않는 경우들이 높은 검거율을 만들었음에도 말이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 피해지원을 받은 피해자 중 약 38%의 피해자만이 경찰신고를 진행했다. 이렇게 수사기관이 파악하지 못하는 '암수범죄'가 통계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에, 검거율은 실제 피해자들이 느끼는 현실의 문제를 그대로 답지 못한다. 검거율로 답변하기 이전에 수사기관은 경찰 조직 내부의 문제점에 대해 깊이 돌아보고 변화를 약속했어야 했다.

정부는 그리고 수사기관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똑바로 듣고 고민해야 한다. 이들의 목소리를 피해망상이나 예민한 사람들의 불만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여성들의 공포와 불안을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와 경찰은 변화해야만 한다.

2 | 일상의 폭력에 대한 저항으로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의 의미

남성의 시선은 권력을 가지고 여성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길을 걷는 여성, 물건을 구매하는 여성, 모든 여성의 모습이 촬영당해 포르노로 유통되고 팔린다. 이렇게 여성의 존재 자체를 포르노로 소비하는 남성 시선은 여성 전반에 대한 폭력으로 작용한다. 불법촬영은 마치 '포르노옵티콘'처럼 작동하고 여성은 직장, 집, 숙박업소, 화장실에서까지 불법촬영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게 되었다.

해화역 시위에 모였던 여성들이 모두 스스로를 불법촬영 피해 경험자로 인식하고 있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누구도 자신만은 피해를 입은 적이 없을 거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피해를 겪었는지 아닌지를 당사자조차 알 수 없게 하는 이 문제의 거대함이 그 수많은 여성들의 분노에 불을 붙여 거리로 나올 수 있게 만들었다. 당사자 이면서도 당사자가 아니기도 한 여성들은 일상에 스며든 폭력에 대항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나왔다. 화장실을 편안하게 사용하고 싶다는 당연한 바람, 일상에 폭력이 스며들지 않기를 바라는 당연한 바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3 | 변화의 이정표로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의 의미

1919년 3.1 운동은 일본이 당시 승전국이므로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 통치에 반발한다는 민족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후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근거로 작용하였다. 실제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는 3.1 운동 정신을 계승한다는 문구가 계속 사용되어왔다. 시위와 집회는 시대적 변화와 당대 시민들의 문제의식을 나타내는 이정표이다. 또한 그 이후 변화를 만들어내는 씨앗이다. 만약 시위와 집회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무산된다고 하더라도 실패가 아닌 것이다. 그 시위와 집회가 만들어낸 변화의 씨앗은 이전과는 다른 미래를 만들어낸다.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역사에 기록이 되는 주요한 기점으로서 작용한다.

혜화역 시위 또한 마찬가지이다. 단일의제 여성 집회로 누적인원 10만 명, 한국역사상 최대 인원이 모인 이 시위는 이러한 변화를 향한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한다. 불법촬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은 성폭력 피해자로서, 예비 성폭력 피해자로서 더 이상 수치심이나 죄책감, 불안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분노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리고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기점이 되었다. 조직화된 단체가 아니라 익명의 개인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혜화역 시위는 시민주도 운동과 비폭력 운동이기도 하다. 수많은 여성들은 정부와 수사기관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지켜보고 있으며 이전과는 다른 혁신적인 변화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 눈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4 | 다양한 여성폭력 고발의 마중물로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의 의미

여성혐오와 여성차별이 사회 구조와 문화의 기저에 짙게 스며들어있는 한국에서,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말은 피해망상쯤으로 치부되곤 했다. 그러나 불법촬영 편파수사 사건은 수사과정부터 재판까지 언론과 대중의 집중을 받았다는 이유로 명백히 편파적으로 진행되었다. 압수수색과 구속수사가 진행되었고, 2차 가해자 추적조사, 서버가 해외에 있는 플랫폼 운영자 추적조사, 핸드폰을 버렸던 한강까지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등 누구도 완전히 부정하기 어려운 차별의 증거가 된 것이다. 이렇게 편파수사 문제는 공론화되고 있는 여성대상 불법촬영 범죄와 이어졌고 여성들의 발화점이 되었다.

미국에서는 1만 5천명의 여성들이 거리로 나왔을 때, ‘여성의 날’¹⁾이 제정되었다고

1)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한다. 해화역 시위는 누적인원 10만 명 이상으로 단일의제 여성 집회로 최대 인원이다. 10대~20대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오프라인 공간에서 정치세력화를 해낸 것이다. 최초 시위에서는 약 1만 5천 명 정도의 인원이 모였으나, 매달 시위가 이어질수록 더 많은 여성들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 자리를 채웠다. 여성폭력 의제를 불편하고 시끄러운 주제가 아닌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 대책을 마련하고 성인지감수성이 전제된 수사를 하라는 분노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말이다. 이 시위가 치러질 때마다 많은 여성들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서로에게 용기가 되는 연대의 경험이었다는 후기를 공유했다.

또한 기존의 단체나 조직체에서 이끄는 집회가 아니라 익명의 개인들이 모여서 새로운 방식의 집회를 만들어낸 것 또한 대중운동으로서 중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해화역 시위는 기존의 남성 중심적 질서에 대한 규탄이기도 하고, 불법촬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규탄 그리고 기존에 단체중심으로 이어져 왔던 시위나 집회에 대한 규탄의 의미를 갖는다. 불법촬영 편파시위는 불법촬영 이슈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성차별 적이고 여성혐오적인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 그들이 언제까지 이어져 나갈 수 있을지, 다른 여성의제에도 퍼져 힘을 실어줄 것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큰 가능성이 되고 있음은 명확하다.

5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 사례를 통해 본 경찰수사의 문제점

2018년 5월 14일,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성별 따라 수사속도 조절, 있을 수 없는 일”과 같은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현장 단체로서 최근 ‘대학 수업 중 누드 크로키 모델 불법촬영·유포 사건’에서의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대비되는 본 단체 지원 사건에서의 피해사례를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사례1]

동의 없이 촬영된 성적 촬영물이 피해자의 이름, 학교, 신분증, 연락처를 포함한 신상 정보와 함께 불법 포르노 사이트와 SNS 등의 플랫폼에 유포되었다. 용의자는 전 남자 친구 한 명으로 특정되어 있었고,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를 모두 수집해 놓은 상태였다. 피해자는 경찰에 전 남자친구를 고소하며 피해촬영물 추가 유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구속수사를 요청하였다. 원본 영상을 찾아내 삭제할 수 있도록 주거지 압수수색을

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 측에서는 피해자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다.

결국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 가해자는 형사사건이 종결된 후 자신을 고발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원본 영상을 2차로 유포하였다. 피해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고소 및 삭제 등의 피해회복과정이 처음부터 반복되었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더욱 심각해졌다. 피해자는 1차 형사고소에서 수사기관 측의 적극적인 협조로 피해촬영물 원본이 압수되었다면 이와 같은 2차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며 원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사례 2]

합의 하에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 전 남자친구에 의해 동의 없이 유포되었다. 유포 게시물에는 피해자에 대한 성적인 모욕 글과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 전 남자친구의 휴대폰으로 촬영되었던 영상이고, 유포된 모욕 및 허위사실에도 전 남자친구만 알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전 남자친구가 가해자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 중 피의자가 사이버성폭력 가해 사실을 부인했다며 피해자에게 사건 진행의 어려움을 알렸다. 피해촬영물이 유포된 플랫폼이 해외 불법 포르노 사이트였고, 한국 수사 기관은 해당 사이트에 게시물을 올린 사람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에 큰 상처를 입었다. 어떤 범죄든,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순순히 인정하는 가해자는 드물다. 그러나 사이버성폭력 범죄 수사에서는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 사건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고, 수사기관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사례 3]

촬영물을 이용한 사이버성폭력 피해 유형에는 ‘유포 협박’이 존재한다. 전 남자친구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 있던 가해자가 ‘다시 만나 달라’는 등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를 말한다. 유포 협박에 시달리고 있는 대부분의 피해자는 가해자 구속수사를 원한다. 가해자가 신고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영상을 유포해 버릴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공포가 매우 합리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구속수사가 가능하다는 의지를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결국 피해자가 신고를 포기하고 사적인 방법으로 해결 시도를 해야 했던 경우도 있었고, 본 단체와 다시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도 많

았다.

많은 피해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기대했다가 그렇지 못한 현실을 마주하고 나면 매우 절망적인 심경을 토로한다. 어떤 피해자는 홍대 사건을 보며 구속 수사가 이렇게 쉬운 줄 몰랐다고 말했다.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를 실시했다고는 하지만, 정말 이유가 그것뿐인지, 여태까지 증거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이 없었던 가해자가 몇이나 됐을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위 유포 사례 피해자들의 피해계시물 댓글 란에는 수십 개의 조롱과 2차 가해 댓글이 있었고, 그 피해촬영물을 저장하고 공유하고 시청하는 가해자들이 다수 존재했다. 홍대 크로키모델 불법촬영 사건의 수사기준을 적용하자면 분명 그들도 수사가 필요한 2차 가해자일 텐데, 과거 사건 진행 당시에는 왜 이를 2차 가해로 분류하지 않고 이 사건처럼 경찰 차원에서 채증이나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인지도 피해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 피해자들이 그동안 간절히 바랐던 대응은 바로 이번 홍대 크로키모델 불법촬영 사건과 같은 조치였다.

홍대 크로키모델 불법촬영 사건에서, 경찰은 가해자를 검거한 후 이에 만족하지 않고 피해 발생 플랫폼과 운영진으로 조사 범위를 넓혔다. 만약 워마드 관리자가 범죄 사실을 알고도 가해자의 활동 기록을 삭제해줬다면 증거인멸 공범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워마드가 그동안 경찰이 수사를 꺼려왔던 기존 포르노 사이트처럼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는 매우 이례적이고 고무적인 시도라 평가할 만하다. 피해자의 신고를 통해 가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촬영물을 유포한 특정 플랫폼의 범죄 행각까지 인지한 경우 플랫폼의 범죄 또한 조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사실을 드디어 확인받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본 단체에 접수된 유포피해 사례의 피해자들의 피해촬영물이 유포된 300여 개의 불법포르노사이트 마다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불법포르노사이트는 심지어 워마드와 달리 피해촬영물과 포르노를 자유롭게 유통하고 소비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범죄자들의 범죄 행각을 은폐, 방조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 집단이기 때문에 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어떤 사이트는 성매매 업소나 불법도박과 연계되어 있고, ‘강간 약물’을 판매하기도 한다. 경찰은 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해당 해외 플랫폼에 자료 협조 요청을 하는 등 홍대 크로키모델 불법촬영 사건과 동일한 수준의 적극성을 갖고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6 | 홍대 크로키모델 불법촬영 사건을 통해 본 우리 사회의 개선 가능성

첫 번째,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태도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세심함이다. 피해자의 자살을 염려하는 모습도 새로웠지만, 2차 가해 증거를 직접 수집했다는 점이 특히 고무적이다. 드디어 경찰 차원에서 2차 가해까지 신경 쓰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그동안 직접 채증을 해야 했던 피해자들과 수사 과정에서부터 수많은 2차 가해를 당하고 수사관에게 골칫거리 취급받았던 피해자들에게 큰 진보로 다가올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로, 가해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집중하는 대중의 문제의식이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의 잘못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 그가 문란해서, 옷을 벗고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겪게 된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이든, 누구도 사람의 몸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유포해서는 안 된다. 유포된 피해촬영물을 소비해서도 안 된다. 홍대 크로키모델 불법촬영 사건에서 보였던 일반 대중들의 일관된 견지가 다른 여성대상 불법촬영 사건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언론과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남성 피해사례와 여성 피해사례의 차이를 이야기 하는 것은 남성 피해자에 대한 공격이나 사건의 사소화가 아니다.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같은 사건도 달라진다는 현실 인식이 편파수사 문제의 본질을 흐린다는 의견이 존재하나,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성별은 불법촬영과 여성대상 폭력을 설명하는 근본적인 성질 중 하나다. 오히려 어째서 이제야 이렇게 이례적인 사건 처리와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졌는지는 현장 단체로서 반드시 질문을 던져야 할 지점이었다. 홍대 누드크로키 수업 사건의 가해 집단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하는 동안 본 단체가 지원하는 여성 피해자가 포르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는 현실 속에서, 이 차이에 대해 고민하지 않은 채 넘어가는 것이야말로 직무유기였다.

7 |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를 통해 길어낸 ‘우리’의 과제

여기에서 ‘우리’라 함은 불법촬영 문제와 연결되어있는 모든 사람들, 해화역 시위의 목소리를 정책과 현안으로 만들어야 하는 모든 사람들, 여성폭력과 여성차별에 대해 연구하고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이다. 우리는 해화역 시위에 대해 공론장에서 충분히 이야기하지 못했다. 그 의미와 과제의 충위를 섬세하게 나누지 않고 일단 박수를 치거나, 혹

은 문제점을 먼저 지적하였다. 이렇게 공론장에서 다루기에는 어려운 과제라는 이유로 그것을 미뤘을 것이다.

먼저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의 주요 타깃이었던 수사기관은 조직 내 성인지감수성의 상향평준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산야동’을 한 장르로, 하나의 성적취향으로 소비하는 문화를 만들며 막대한 수익을 올린 웹하드와 불법포르노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피해촬영물을 ‘야동’으로 사고 팔며 시장을 만들고 성폭력을 산업화한 대상들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여성들의 불신과 분노는 더 커질 것이다.

다음으로 연구자는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 다루고 기록해야 한다.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왜 수많은 여성들이 계속해서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는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7월 3일 "일반적인 처리를 보면 남성 가해자의 경우에 더 구속되고 엄벌이 가해지는 비율이 더 높았고 여성 가해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볍게 처리됐다"며 "그렇게 비교해 보면 편파수사라는 말이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다. 남성 가해자, 여성 피해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불법촬영 문제에서 당연한 처리결과였음에도 편파수사가 아닌 이유에 활용한 것이다. 물론 "여성들의 문제의식은 일반적으로 몰카범죄나 유포에 대한 사회적인 처벌이 너무나 가볍다는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가 그런 범죄를 통해서 여성들이 입는 성적인 수치심, 모욕감 등 피해에 대해서 그 무게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으나, 여성들의 분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여성들의 삶에 스며든 폭력을 들여다 보고 해결해내고자 많은 고민과 실천을 해야 한다.

앞으로 불법촬영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혜화역 시위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더 나은 방향들을 고민한다면 우리는 먼저 박제된 활자로 적혀있는 혜화역 시위에 대한 분석을 읽기보다도, 각자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혜화역 시위의 의미와 과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혜화역 시위에서 사용된 구호들의 정합성이나 현실가능성을 따지기보다도 혜화역 시위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왜 그렇게 많고 젊은 여성들이 거리로 나왔는지 짚어내야 한다. 평가와 재단을 하기보다 ‘나’의 자리에서 돌아봐야 한다. 경찰도, 정부도, 여성학자도, 활동가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의미를 길어내야 하며 더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불법촬영 문제와 관련해서 활동하는 한명의 활동가로서 그 한계를 먼저 지적하기 보다는 몇 만 명의 여성들이 함께 불법촬영 근절을 외칠 수 있는 그 균열의 공간이 탄생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싶다.

발제2

온라인상 불법촬영물 유포 방지를 위한 개선과제

최진응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온라인상 불법촬영물 유포 방지를 위한 개선과제¹⁾

최진응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I | 들어가며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접촉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로는 카메라를 통한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의 비동의 유포, 리벤지 포르노와 같은 비동의유포성적촬영물의 유포, 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합성된 성적 촬영물 유포, 통신 매체를 통한 성적 촬영물의 전송, 음란물의 제작 및 유통, 아동청소년음란물의 제작·소지·유통 등이 디지털 성범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불법 촬영물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경우 일단 온라인상 유통이 되는 경우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인터넷상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된다는 점, 지속적인 다운로드 및 업로드가 이루어져 근본적인 정보가 삭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문제가 있다.

본 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 중 최근 뜨거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불법 촬영물을 중심으로 범죄 현황, 범죄 수사 및 불법 촬영물 삭제와 관련한 문제점, 그리고 불법 촬영물 유포 방지를 위한 입법 및 정책적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이 글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의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조주은·최진응 저, NARS 입법·정책보고서 제7호, 2018.8.8. 발간)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글이며, 일부 주장은 보고서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II | 관련 법률 및 현황

(1) 관련 법률

불법 촬영 행위 및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제3항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동의 없는 불법 촬영 행위, 피해자의 동의 없는 불법 촬영물의 유포 행위(제1항), 동의를 얻고 촬영한 성적 영상물 등을 피해자의 동의없이 유포하는 행위(제2항), 영리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제3항)를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터넷상에서 불법 촬영물 등이 유포되는 경우 해당 불법 정보에 대한 삭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촬영 관련 정보의 삭제 및 차단을 인터넷 사업자와 운영자에게 요구(시정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를 사업자나 운영자 등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삭제 및 차단을 위한 명령(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불법 촬영 관련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범죄 목적의 정보)에 해당하는 불법 정보에 해당하며, 제9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44조의7 제3항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 명령 대상이 된다. 만일 사업자 및 사이트 운영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2)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 관련 수사 및 삭제 현황

가. 수사 현황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 범죄인 불법 촬영 행위와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 행위와 관련한 수사 결과는 [표 1]과 같다. 발생건수는 2011년에 비해 2016년에 약 3.4배 증가하였으며(1,523건 → 5,185건), 검거건수는 약 3.7배 증가한 것으로(1,332건 → 4,904건) 조사되었다.

[표 1]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 발생·검거건수

구분(건)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발생건수	1,523	2,400	4,823	6,623	7,623	5,185
검거건수	1,332	2,042	4,380	6,361	7,432	4,904

주1) 2017년 이후 통계 수치는 제공받지 못함
 주2) 발생건수: 고소, 고발 및 수사기관 범죄 인지 건수
 자료: 경찰청,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18.6.4.).

불법 촬영 행위 및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 행위에 대한 기소 송치 건수는 [표 2]와 같은데,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3,993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 특히 기소와 불기소 비율을 보면, 기소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피의

자에 대한 검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부분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송치 의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에 대한 기소·불기소 송치 의견 현황

구분(건)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기소	불기소	기소	불기소	기소	불기소	기소	불기소	기소	불기소	기소	불기소
총계	1,253	91	1,702	119	2,615	210	2,676	223	3,633	319	3,993	483

주: 2017년 이후 통계 수치는 제공받지 못함

자료: 경찰청,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18.6.4.).

나. 삭제 현황

인터넷상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후 시정 요구(국내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불법 정보는 삭제, 해외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주로 접속차단 조치를 함), 심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사이트 운영자에게 정보 삭제 등의 자율적 조치 요구, 필터링사업자 및 웹하드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정보의 다운로드, 업로드 등을 막기 위한 영상 필터링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국내에 서버를 둔 사이트보다는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서 주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외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를 주로 취하고 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에는 심의 대상 3,768건 중 3,573건에 대해 접속차단, 2016년에는 심의대상 7,356건 중 7,315건에 대해 접속차단, 2017년에는 심의대상 2,977건 중 2,976건에 대해 접속차단, 2018년에는(4월 30일 기준) 심의대상 3,189건 중 3,100건을 접속차단 조치하였다.

[표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 조치 현황

(단위 : 건)

구분	심의	시정요구		
		계	삭제	접속차단
2015년	3,768	3,636	63	3,573
2016년	7,356(4,389)	7,325(4,389)	10	7,315(4,389)
2017년	2,977(1,886)	2,977(1,886)	1	2,976(1,886)
2018년(~4.30.)	3,189(1,908)	3,162(1,888)	62(19)	3,100(1,869)

주: ()는 기 시정요구한 건과 동일 내용의 정보를 추후에 다시 모니터링한 수치임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18.6.4.).

둘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심의 이전 단계에서 자율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표 4]를 보면 2015년에 955건, 2016년에 1,100건, 2017년에 7,309건, 2018년에(4월 30일 기준) 2,562건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자율조치²⁾를 사업자에게 권고한 바 있다.

[표 4] 디지털성범죄정보 관련 자율조치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4.30.)
자율조치	955	1,100	7,309	2,562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18.6.4.).

셋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영상에 대한 필터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보면 [표 5]와 같다. 2016년에 306건, 2017년에 275건, 2018년에(4월 30일 기준) 186건을 구축하여 동 정보를 필터링 업체 및 웹하드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표 5] 디지털성범죄 영상 DB 구축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4.30.)
해시값 등록	-	306	275	186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18.6.4.).

III¹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 관련 수사 및 삭제의 한계

(1) 수사의 한계

온라인상 불법 촬영물의 유포와 관련하여 경찰 수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 촬영물 등이 인터넷상에 유통되는 경우에 유포자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리벤지포르노와 같이 비동의유포성적촬영물처럼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와는 달리 피해 촬영물을 제3자가 유포한 경우는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비동의유포성적촬영물의 경우도 가해자로 추정될 수 있는 피의자가 유포의 고의 또는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는, 이를 반박할 물증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이전에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불법·유해 정보를 사업자가 스스로 조치(삭제 등)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조치

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즉 위법성을 증명할 물증을 확보하려면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통해 신속하게 증거를 찾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이와 같은 강제 수사를 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나아가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시킨 경우, 유포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불법 촬영한 자와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한 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피해 촬영물에 대한 증거 은닉 또는 폐기, 나아가 재유포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표 6]을 보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 사건의 경우 불구속 수사 원칙³⁾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1년과 2016년 사이에 불구속 수사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 사건에 대한 구속/불구속 수사 현황

(단위: 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총계	29	1,224	48	1,776	74	2,764	61	2,844	104	3,857	134	4,365

주: 2017년 이후 통계 수치는 제공받지 못함
 자료: 경찰청,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18.6.4.).

셋째,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이 현재 각 지방경찰청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수사 여력에 한계가 있다. [표 7]을 보면 현재 전국 17개 지역 각각에 1개의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이 운영되고 있지만, 사이버성폭력수사팀 내에 수사 인력은 총 50명에 불과하다. 불법 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 성폭력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담팀에 배치된 소수의 인력이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기에는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표 7] 각 지방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 인력 현황

(단위: 명)

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0(18)	6(2)	5(1)	3(1)	2(1)	2(1)	2(1)	3(1)	5(1)	2(1)	3(1)	1(1)	3(1)	2(1)	3(1)	2(1)	3(1)	3(1)

주: 괄호 안은 여성경찰관수임
 자료: 경찰청,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18.6.4.).

3)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넷째,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피해사례가 있으며, 불법 촬영물 등이 온라인 상에서 유포되는 경우에도 처벌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되어 수사가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다. 즉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적 구성요건을 보면 피해자 자신이 촬영한 경우에는 촬영된 성적 영상물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유포되더라도 동법상 처벌 대상에 포함되고 있지 않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 행위가 이루어지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법정형이 낮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하고 있다.⁴⁾

(2) 정보 삭제의 한계

불법 촬영물 등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로 담당하고 있으나, 피해 정보의 삭제 및 차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삭제 절차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이 제기되고, 심의와 제재 조치까지 이르는데 일정 기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삭제에 어려움이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도입하여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하여 심의 기간을 2~3일(기존 10.8일)로 단축하고 있으나, 인터넷의 속성상 불법 촬영물 등이 업로드되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유포된다는 점에서 이 기간도 피해 촬영물의 유포를 막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에 불법 촬영물 등이 유통되더라도 우회 프로그램의 사용 혹은 기술적인 이유로 사이트의 차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피해 촬영물이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유포되는 문제가 있다.

둘째,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접속 차단 조치는 근본적으로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막지는 못하고, 정상적인 접속 차단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유사 불법사이트가 생성되어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시키는 문제가 있다. 즉 접속 차단 조치는 국내 이용자의 불법 사이트로의 접근을 막을 수는 있지만, 해외 이용자의 접근은 막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불법 해외 사이트가 접속 차단이 이루어지더라도 새로운 URL 주소로 유사 사이트들이 만들어져 불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 차단 조치가 제한적 효과에 그치는 문제가 있다.

셋째, 온라인상 불법 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모니터링 및 삭제 작업이 필요하지만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즉 온라인

4) 징역형을 보면 음란물 유포죄는 징역 1년 이하이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징역 3년 ~ 7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상에서 불법 촬영물 등을 삭제 하더라도 다른 한편에서 업로드가 진행된다면 추가 삭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꾸준한 모니터링 및 삭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디지털 장의사와 같은 민간 삭제 업체들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불법 촬영물 등을 장기간에 걸쳐 모니터링하고, 삭제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기 심의한 정보에 대해 반복적인 모니터링 및 차단 조치를 하고 있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업무 범위가 넓고, 인력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인의 불법 촬영물 등을 전담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IV | 개선 과제

(1)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에 대한 수사

첫째, 온라인상에서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자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적용 여부에 대해 합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포르노그래피의 경우 국내에서는 제작 및 유통이 불법이라는 점에서,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국산 음란물들은 불법촬영되었거나, 동의없이 유포된 사적인 성적 촬영물에 해당되는 경우가 다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피해 촬영물의 구체적 정황, 해당 촬영물 유포시 상황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법성이 명확히 인정된다면 수사기관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가 아닌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불법 촬영물 등의 경우 촬영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촬영물의 불법성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 아직 불법 촬영물 등을 국산 음란물과 동일시하는 인식의 문제 등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불법 촬영물 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불법 촬영물 관련 정보 유포의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성폭력처벌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피해자 자신이 촬영한 영상물 등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상에서 유포하는 자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동법 제14조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동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음란물 유포죄나 사이버 명예훼손죄 등을 통해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법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동법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구성요건을 두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현행 법률에서는 불법촬영한 자가 영상을 직접 유포

하는 경우와 불법촬영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재유포하는 경우, 그리고 음란물과 비 음란물의 유포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죄질의 경중을 고려할 때 촬영 당사자에 의한 유포 행위와 음란물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합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실 이미지와 가상 이미지를 합성한 성적 촬영물인 지인 능욕 물의 경우, 실제 상황이 아닌 가상의 사진이나 영상이라는 점에서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현행 음란물 유포죄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으므로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불법 촬영물 등이 유포되는 경우 혐의 입증을 위해 적극적인 초동 수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불법 촬영물 등을 은닉하거나 폐기하고, 사후에 온라인상 유포할 수 있는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구속 수사의 목적 그리고 침해되는 이익 사이의 비례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경우 PC, 스마트폰, USB 등의 장치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온라인 계정에도 피해 촬영물이 저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압수·수색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내 수사망을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 서버를 통해 다수의 불법 촬영물 등을 유통하는 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불법 촬영물 등이 해외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다수 유통되고 있고, 국내인이 비실명으로 동 사이트에 가입하여 다수의 불법 촬영물을 업로드 하고 있는 현실에서, 수사의 어려움이 있으나, 이들 해외 사이트를 통한 해비 업로더를 적극적으로 검거하기 위한 수사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국내인이 해외 서버를 둔 불법적인 사이트를 운영하고, 동 사이트에 국내 이용자를 유인하기 위해 국내 불법 촬영물 등을 게시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사이트 내에 정보 활용 및 역추적을 통해 적극 수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불법 촬영물 등 불법 정보의 삭제

첫째, 불법성이 명확한 피해 촬영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속한 삭제 및 차단 조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보면, 민원 접수나 자체 인지 → 심의 → 제재 결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심의에 신속은 기할 수 있으나, 신속한 조치를 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위법성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심의 절차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조치, 후심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터넷상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삭제 및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국내 불법 촬영물이 게시되는 해외 스트리밍사이트의 경우 보안 조치가 되어 있어, 국내 망사업자에 의한 접속 차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불법적 스트리밍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불법 촬영물 등의 정보를 기록한 해시값(hash) 및 DNA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에 유포된 불법 촬영물 등을 신속히 탐지하고, 삭제 및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셋째, 해외 검색서비스 및 SNS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불법 촬영물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네이버 등 국내 검색사이트들은 불법 촬영물 등과 관련된 검색 결과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한 자율적 조치를 하고 있지만, 구글 등 해외 검색사이트에서는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검색이 용이하고 이를 통해 불법 촬영물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텀블러, FC2 등 해외 SNS,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통해서도 다수의 국내 불법 촬영물 등이 유통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해외 플랫폼 서비스가 국내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하여 검색 배제 및 해당 정보를 자율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적극적 규제 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 사후적 방안에 대해 합리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먼저 사전적 규제와 관련하여,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는 웹하드 등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음란물의 검색, 다운로드, 업로드 등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 정보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 사후적 규제 방안으로는 웹하드 등 인터넷플랫폼서비스에서 불법 촬영물 등이 온라인상에 유통되고 있다는 신고가 있고, 동 유통 정보가 위법성이 확인된다면 삭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에게 과태료 등의 제재 방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전적·사후적 규제의 경우, 불법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음란물과 달리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서는 불법성 여부에 대해 사업자가 명백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다수의 불법 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해외 스트리밍사이트에는 법적 강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입법적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경찰청,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18.6.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18.6.4.).

조주은·최진응,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의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NARS 입법·정책 보고서 제7호, 국회입법조사처, 2018.8.8.

발제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

조주은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방안¹⁾

조주은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최근 불법촬영물 유포범죄에 따른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여론이 커져가고 있다. 그리고 불법촬영물 유통 플랫폼은 단속하지 않고 여성 커뮤니티만 수사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여론 역시 뜨거운 상황이다. 가령, 2018년 7월 29일에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한다.”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청와대 청원은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참여하여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응은 수사,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가장 시급한 업무는 피해영상의 신속한 삭제 및 재유포방지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은 관련 부처가 협업하여 이루어졌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이라는 제목의 이 발표문은 여성가족부 산하 피해자 지원기관, 즉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의 업무를 중심으로 논하도록 하겠다.

1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현황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의3(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에 근거하여 피해영상삭제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2018.4.30.)되었음

1) 이 발표문은 최진웅 조사관과 함께 작성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정책의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8. 8. 8.에서 피해자지원과 관련된 부분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고 있음
- 삭제지원팀과 상담팀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팀은 팀장 포함 9명, 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담당업무는 상담지원, 삭제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 기타지원(피해자 지원 제도 연계, 기타 사회적 지원 연계), 사후 모니터링 등임([표 5] 참조)
 -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삭제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피해영상에 대해 2~3일간 센터 보유 불법 사이트 등에 대한 웹검색을 통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고 플랫폼별 운영자에게 해당 영상물의 삭제를 요청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심의를 요청하고 있음
 - 요청 후에는 3~6개월간 매주 단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이후에는 6개월~1년 주기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임
- 2018년 예산은 6억 4,900만원이고, 상담 및 삭제인력(인건비)에 4억 5,300만원, 운영비에 1억 9,600만원이 배정되었음

[표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담당업무

상담지원	삭제지원	수사지원	기타지원
- 관련 문의 응대 - 지원 내용 안내 - 피해자지지 상담	- 피해 영상 삭제 지원 - 관련 증거물 확보 - 삭제 지원 리포트 제작 - 사후 모니터링	- 채증자료 작성 지원 - 신고 및 조사 동행 - 의견서 작성 등	- 성폭력피해자지원제도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법률 지원 연계 • 의료 지원 연계 • 보호시설 연계

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2) 여성긴급전화 1366

- 여성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근거하여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24시간 Hot-Line으로 운영되며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조 및 연계활동을 하고 있음
- 여성긴급전화 1366은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1개소씩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단, 서울·경기는 2개소)되어 있음
- 상담원²⁾의 업무는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고접수 및 긴급상담·구조, 긴급보호

2) 상담원의 자격은 ①가정폭력, 성폭력 또는 성매매 관련 시설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

조치(긴급상황에 처한 피해자에 대한 위기개입 및 긴급한 구조를 위해 112, 119 등 연계조치, 관련 상담·의료·법률구조기관 또는 보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연계조치), 긴급피난처 운영, 긴급피난 현장상담 지원 사업 등임

(3) 성폭력상담소

-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피해자보호법」 제10조와 제11조에 근거하여 성폭력 피해자,데이트폭력 피해자,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2018년 기준으로 전국에 162개소의 성폭력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음³⁾
- 담당 업무는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의료지원,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등임

(4) 해바라기센터

-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피해자보호법」 제18조에 근거하여 「형법」,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표 6] 참조)
- 2018년 기준으로 3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음
 - 16개소는 경찰이 상주하는 위기지원형, 8개소는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심리치료에 집중하는 아동형, 14개소는 경찰이 상주하면서 심리치료도 지원되는 통합형으로 운영되고 있음
 - 아동형 해바라기센터는 월~금요일까지 09:00-18:00 동안 운영되고 있음
- 담당 업무는 수사지원, 상담지원, 심리치료,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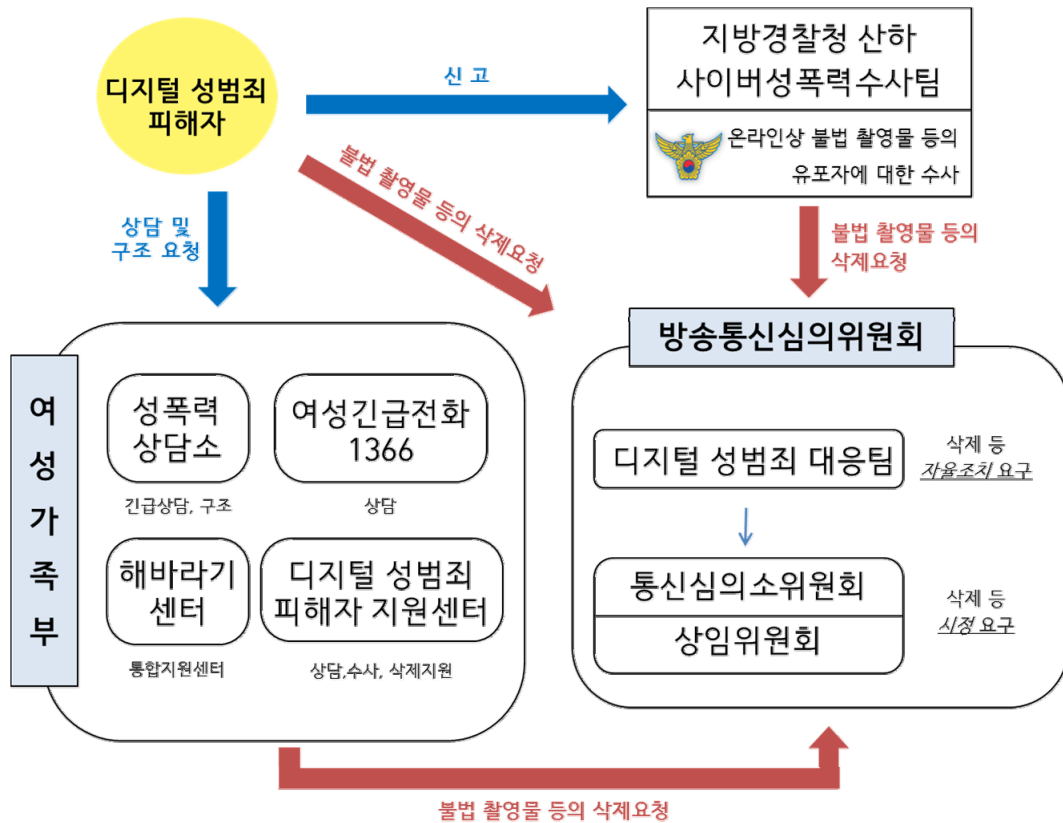
[표 2] 해바라기센터 유형별 주요 기능 비교

구 분	위기지원형	아동형	통합형
연혁	2005년~	2004년~	2010년~
대상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19세미만 아동·청소년 및 지적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3) 장애인 성폭력상담소는 24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구 분	위기지원형	아동형	통합형
개소수	16개	8개	14개
근무 형태	365일 24시간	월 ~ 금 09:00 ~ 18:00	365일 24시간
경찰 근무	상근 여경 파견	출장 지원	상근 여경 파견
주요 업무	수사지원, 법률지원, 상담지원, 의료지원	상담·심리지원, 법률지원, 의료지원, (출장)수사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 상담지원, 의료지원, 심리지원
강점	피해자 긴급지원, 수사지원	전문적 심리치료	위기지원형+아동형 (통합서비스)

자료: 여성가족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18.5.).



2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실적

여성가족부 산하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한 실적은 [표 3]과 같다. 다음과 같다.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개소(2018.4.30.) 이후

2018년 6월 18일까지 총 493명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3,115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표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업무실적(2018.4.30.~6.18.)

구분	지원건수 (피해자 수)	상담지원	삭제지원	수사법률지원	의료지원
계	3,115건 (493명)	861건	2,241건	4건	9건

자료: 여성가족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18.6.22.).

2017년도 기준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의 전체상담 289,034건 중 디지털성범죄 관련 상담 실적은 488건으로 약 0.17%이다.⁵⁾

2017년 기준으로 성폭력상담소의 성폭력피해 총 상담인원 29,695명 중 디지털 성범죄 관련 상담 인원은 1,491명으로 약 5%이다.⁶⁾

2017년도 기준으로 전국 해바라기센터의 성범죄피해자 총 이용자 19,423명 중 디지털 성범죄 관련 상담 인원은 708명으로 약 3.6%수준이다.⁷⁾

3 | 문제점

1) 피해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지원체계

첫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피해자 지원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타 기관과 차별성을 갖고 출범하였지만, 지원인력 및 홍보비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운영에 있어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지원인력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전화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화상담 운영시간 외의 상담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받고 있다.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지원은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이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업무는 삭제에 인력, 서비스, 예산이 집중되어 이루어질

4) 여성가족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18.6.4.).

5)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의 실적 관련, 기간은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2017.9.26.부터 12.31.일까지의 통계임

6) 여성가족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18.6.4.).

7) 여성가족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18.6.4.).

필요가 있음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가 가장 시급하나 삭제팀과 상담팀으로 구분되어 인력과 서비스의 내용 등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신속한 지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업무실적을 참고할 때, 삭제지원 실적(2,241건)의 상당수는 플랫폼별 운영자에게 해당 영상물의 삭제를 요청한 건수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수를 포함한 것이고, 세부적으로 실적관리를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여성가족부가 일정시기 별로 삭제와 심의 요청건수 대비 완료·심의통과 건수(비율) 관련 통계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예산에는 홍보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으며, 센터의 지원역량의 한계로 인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기관들은 아직까지 불법 촬영물 등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지원의 내용과 규모가 미흡한 실정이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을 하고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의 경우 변화하고 있는 성폭력피해양상에 대응하기에는 보수교육의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도 관련 시설의 이용에 소극적인 실정이다. 특히 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 중에서 유일하게 24시간 Hot-Line 체계로 운영되며 긴급상담 및 안내·보호조치를 하고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담원의 자격 관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다.⁸⁾

성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물리적 외상을 입는 경우가 드물고 정신과나 심리치료 지원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서비스가 해바라기 센터의 유형 중 통합형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위기지원형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심리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아동형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심리치료가 제공되거나 13세미만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이 2017년에는 성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일부 이루어졌고, 2018년에는 보수교육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모두 10시간 이내에 그치는

8) 여성긴급전화 1366의 법적 근거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피해자, 그 중에서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개소한 이후에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구조요청에 대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아닌 시민단체에 연계하고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는 상황이다.

등 관련 전문성을 쌓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표 4] 참조). 그나마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종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이 운영되기 시작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타 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

[표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교육 현황

구 분	2017년	2018년
여성긴급전화 1366	해당없음	○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 성폭력 신입입문과정(4월, 9월 예정, 총 2회) 중 '디지털 성폭력의 이해와 피해지원(2시간)' 교육 실시 - 성폭력 피해지원 기본역량 강화교육(11월 예정, 1회) 중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의 이해(2.5시간)' 교육 실시 ※ (대상)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성폭력상담소	○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 성폭력 신입입문과정(11월) 중 '디지털 성폭력의 이해와 피해지원(2시간)' 교육 실시 ※ (대상)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 성폭력 신입입문과정(4월, 9월 예정, 총 2회) 중 '디지털 성폭력의 이해와 피해지원(2시간)' 교육 실시 - 성폭력 피해지원 기본역량 강화교육(11월 예정, 1회) 중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의 이해(2.5시간)' 교육 실시 ※ (대상)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및 1366센터 종사자
해바라기센터	해당없음	○ 「사례를 통한 사이버 성폭력 지원」(3월, 2시간) ○ 해바라기센터 종사자 공통역량강화교육(5월) - 디지털 성범죄 교육내용 및 시간 : 디지털 성범죄의 이해, 피해자 지원실무 등 총 6시간 ※ (대상) 해바라기센터 종사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해당없음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직무(상담·삭제지원) 교육(4월, 3회 총 39시간) ○ 수사지원 채증자료 작성 교육(4월, 1회 총 3시간) ○ 사례분석 및 수퍼비전(4월부터 매월 1회 실시, 회당 1시간) ※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종사자

자료: 여성가족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18.6.8.).

셋째, 여성가족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중 많은 부분이 중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관련기관들은 피해자가 원하는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가족부 산하의 여러 기관들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유사한 내용의 상담, 법률·의료 지원, 수사지원에 머무르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가 6억 4,900만 원의 예산으로 설립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삭제지원을 제외하고는 기존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에서도 제공하고 있는 서

비스이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 「성폭력피해자보호법」에 제7조의 3이 신설되어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었으나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또는 차단 요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다.

[표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지원기관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상담지원		○	○	○	○
수사지원			○	○	○
삭제지원					○
기타 지원					
	무료법률 지원연계	○	○	○	○
	의료 지원연계	○	○	○	○
	보호시설 연계	○	○	○	○

주 : 성폭력상담소에서의 수사지원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위한 동행으로 이루어짐. 위기지원형 해바라기센터(2017년 168개소)에서 경찰이 상주하는 가운데 직접적인 수사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수사지원원은 채증자료 작성지원, 신고 및 조사동행 및 의견서 작성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자료 : 여성가족부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2018).

2) 피해자 지원체계의 분산 및 기관 간 연계 부족

첫째,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등 유포에 대한 수사,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피해자 지원 등이 기관 간에 업무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각각의 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행정 서비스들이 피해자에게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 행위의 경우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구제 절차를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여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각 기관의 소관 업무에 기반하여 각각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7개의 중앙부처, 관련 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나 개별 부처가 수행하고 있는 대책에 대한 평가에 기반한 업무조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효율적인 방식과 절차에 입각한 신속한 구제를 받고 있지 못하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각각의 개별 기관에 수사, 삭제, 지원 등을 별도로 요청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

둘째,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로 인한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피해 촬영물을 노출시키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느끼고 있어,⁹⁾ 수사, 삭제 및 보호·지원 기관을 방문했을 때 각각의 피해자 유형에 따른 원스톱 지원체계가 작동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일원화된 지원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의 요구는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 ① 경찰의 수사는 원치 않고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및 재유포 방지를 원하는 유형
- ② 불법 촬영물 등을 게시한 자와 유포한 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 피해 촬영물의 삭제 및 재유포 방지를 원하는 유형

하지만 정부의 지원체계는 이러한 피해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운영되고 있지 않다. ① 유형의 피해자를 위해서는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삭제 및 차단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현재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상태다. ② 유형의 피해자를 위해서는 경찰청에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 요구 권한이 필요하나, 피해 촬영물의 삭제 및 차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에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피해가 신고 되었을 때, 경찰이 해당 건에 대한 수사 및 해당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또 다른 기관의 담당자에게 이야기하는 고통을 겪지 않으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삭제 의뢰가 일원화되어 있지 못하다.

셋째, 피해자의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가 특화되어 지원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관련 기관 간에 연계를 통하여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수사 및 삭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 이러한 연계 시스템도 원활하게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현재 온라인상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및 차단을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수사 기관인 경찰청과 연계하여 피해 촬영물에 대한 수사 및 심의를 동시에 진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일선 현장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재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및 수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일선에서 활

9)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를 개설한 이후 처음 방문한 피해자는 민간영역의 디지털장르사에게 몇백만원에 달하는 피해영상삭제비용을 대출까지 받아서 해결하고 있었음에도, 무료로 삭제지원을 해주는 시민단체에 의뢰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본인의 영상을 단 한명이라도 더 보는 게 싫다.”는 것이었을 정도로 피해지원을 위한 단체에게까지도 피해를 반복하여 노출시키는 것에 대하여 심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상태임

용하고 있지는 못하다.¹⁰⁾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업무실적을 살펴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도 수사·법률 지원과 의료지원을 위한 연계가 매우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지금까지 온라인상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이 민간영역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이들이 관련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지만 시민단체-규제기관과의 국내외 업무 협의 네트워크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불법 촬영물 등의 신속한 탐지 및 삭제 작업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이전에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라는 비영리 여성인권운동단체 등과 일명 디지털 장의사라고 불리는 영리업체에 의하여 삭제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온라인상 유통되고 있는 불법 촬영물 등의 신속한 삭제를 위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민간 단체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업무 협의 네트워크가 필요하지만 현재 그러한 시스템 구축이 완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시민단체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에서부터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까지 해오며 축적해왔던 기술 등이 있으므로 규제 기관과 시민단체 간 공식적인 절차에 입각한 기술전수 및 정보공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이러한 연대 체계 구축에 기반한 정보공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불법 음란물사이트 차단을 위해서는 국내를 넘어선 국제공조가 필수적이지만, 정부의 국제 공조 노력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비동의 유포 성적촬영물 등의 인터넷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외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률이 만들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의 입법화 진행상황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업무를 주로 시민단체에서 국제연대를 통하여 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국제연대의 내용은 2018년 6월에 UN WOMEN¹¹⁾에 디지털성범죄가 일국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국제공조를 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이 전부이다.

10)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2018년 말까지 수사와 삭제에 대한 공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11) 여성 차별 철폐와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2010년에 설립된 유엔여성기구임

4 | 개선방안

1)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 지원체계 강화

첫째, 여성가족부는 기존의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안에 설립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관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들 중에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들은 전문성이 강화된 서비스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 중 특히 24시간 상담을 통한 긴급지원을 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동 기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입법적으로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 및 기관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디지털 성폭력의 문제는 산부인과 진료 등의 지원 보다는 정신과나 심리치료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바라기센터의 위기 지원형과 아동형의 경우 관련 기능보완이 필요하다. 나아가 성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포함한 기존역량이 전반적으로 강화될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 센터 등의 경우 전문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수교육을 제공하여야 함

둘째,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기관들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복적 기능의 정비, 상호 기능적 보완, 독립적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하다.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여러 기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상담, 수사지원, 기타지원들의 내용이 중복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 간 기능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상담의 경우 여성가족부 산하 모든 피해자지원기관에서 모두 제공하고 있는 바, 상담팀과 삭제팀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삭제를 기반으로 한 상담으로 업무를 통합하여 피해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장 긴급하고 필요한 지원인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① 경찰 수사를 원하지 않고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만을 원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최근 개소한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가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담당하는 방안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함께 기존 해바라기센터의 14개소 통합형에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을 배치하는 방안. 이 경우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 중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지원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정보확인을 위한 채증절차를 걸쳐 정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 ② 경찰 수사와 함께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도 원하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경찰청을 통한 신고와 함께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지원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사 및 삭제지원을 위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찰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및 차단을 위한 정보와 기술력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 지원에 중점을 두어 개소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경우 지원 인력 및 예산 확보로 인한 홍보 강화,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상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삭제작업이 지속되어야 하는 바, 장기적으로는 여성가족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인권의 관점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 즉 온라인상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및 차단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 과제로는 다음의 내용을 제안하는 바이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인력충원으로 삭제를 중심으로 한 상담방법 다양화 ▲ 여성가족부는 일정시기 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한 건수, 그 중 완료된 건수(비율)에 대한 통계관리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수사·법률 지원 및 의료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바, 원인분석을 통하여 관련 지원을 위한 연계 강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센터에 대한 홍보 강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삭제지원을 중심으로 한 체계 정비 후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홍보 등으로도 업무 확대·강화

2) 피해자 지원의 일원화 및 연계 시스템 구축

첫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연계 시스템 구축으로 피해자 지원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있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경찰 수사를 원하지 않고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만을 원하는 유형과 경찰 수사와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를 동시에 원하는 유형이 있으므로, 이러한 유형별 피해자를 고려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경찰 신고를 원하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기관에서 피해 촬영물 삭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범죄 정보의 삭제와 사이트 차단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불법포 르노사이트에 대응할 수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술이 개선되고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의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경찰 신고와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를 동시에 원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경찰청 방문으로 수사와 피해 촬영물 삭제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경찰 신고와 동시에 제출한 채증 자료 등으로 수사 및 삭제, 재유포 차단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 내 사이버성폭력 수사팀¹²⁾의 기능이 확대·강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피해자 관점에서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수사와 삭제 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피해 촬영물에 대한 수사와 삭제의 경우 기관별로 별도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신속한 피해자 구제에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과 삭제 업무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간에 긴밀한 협력이 가능한 공조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온라인상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에 대한 인지 또는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는 경찰청에 해당 불법 행위를 신고하여 수사와 심의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찰청의 경우에도 피해 촬영물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관련 영상 및 사진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유함으로써 수사 및 심의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온라인상 유통되고 있는 불법 촬영물 등의 신속한 수사 및 삭제를 위해서는 민간 협력 및 국제 공조 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12) 참고로 경찰청은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운영하여 2018. 8. 13.(월)부터 11. 20.(화)까지 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단속 100일 계획을 추진 중이다.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부가 민간 업계 및 시민단체 등이 축적해놓은 기술력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민관협력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앙부처, 관련 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성범죄 민관협의체가 운영 중에 있으며, 동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민간 간의 실효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불법 음란물사이트 서버지의 90%가 미국 등 해외라는 점을 참고하여, 해외 사이트에서의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에 대한 수사 및 정보 차단 등의 국제적 공조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국내 법률과 해외 법률간 상이성으로 인해 해외 사이트에서 불법 촬영물 등이 유포되는 경우 수사 및 삭제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면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노력과 이에 따른 개별국가의 입법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로 인한 사생활 및 인격 침해의 문제를 국제적으로 부각시키고,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와 같은 사이버 범죄의 근절을 위한 국제 협약 등의 제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토론

조운오 교수(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김현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최종상 과장(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최은희 국장(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국)

변혜정 원장(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 공동 세미나 토론문

조윤오 교수(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본 연구는 현장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 수사 및 피해자 보호의 문제점 등을 체계적으로 탐색한 논문입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리벤지 포르노 문제(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와 몸캠 불법도촬 문제를 디지털 성범죄로 간주하며 온라인상에서 빠른 속도로 유포되는 성적 촬영물을 어떻게 신속하게 수사하여 피해자 보호를 극대화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한 시의적절한 연구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불법 카메라등이용 촬영행위와 촬영물 유포행위 등의 처벌 근거가 이미 규정되어 있고,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피해자보호법 등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 규정을 세심하게 정리해 주었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또한, 기존 법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함과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억제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 처벌 전반의 문제점을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수사-피해자 보호-기관 연계 문제를 폭넓게 다룬 보기 드문 귀한 연구라고 봅니다. 몇 가지 추가 의견을 토론자로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저자는 불법 촬영물 유포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 제정보다는 기존 법체계 내에서 양형과 판례를 통해 관련 범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단, 추가로 헤어진 여성을 괴롭히고, 협박할 목적으로 리벤지 복수 포르노를 유포하거나,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유포하는 범죄자에게는 일종의 “목적범”으로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모해 목적 위증죄처럼 특정인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도촬 파일을 업로드하여 유포시킨 경우에는 더욱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상징적 메시지를 일반인들에게 알리고, 그 처벌 근거규정을 만들어 위하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

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온라인 사이버 공간이 갖고 있는 정보의 전파성, 시공간을 초월한 피해자 괴롭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선조치, 후심의 촬영물 차단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조하여 특정인을 괴롭히거나 모욕하는 증오발언이나 영상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자가 직접 검열 조치하는 예방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발생 이후에 피해자 신고가 이루어진 후, 신속한 삭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처음부터 시스템 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일부 영상물은 업로드 자체가 어렵게 만들어야 하고, 그 유포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1차 예방과 2차 예방, 그리고 3차 예방이 디지털 성범죄에서 종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공중보건모델에서 말하는 1차 예방은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식 계몽 및 캠페인과 관련된 활동입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온라인에서의 “네티켓”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디지털 성범죄 예방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예방은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할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예방활동입니다. 주로 데이터폭력이나 오프라인 상의 성범죄 전과가 있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차 예방은 저자가 강조한 불법 촬영물 유포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 엄정과 관련된 특별 억제활동을 말합니다. 범죄가 발생한 사후에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가 다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모든 활동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본 연구과제 제목이 “디지털 성범죄 대응정책의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에 해당하는 바, 대응정책을 1차-2차-3차 예방 차원에서 조금 더 폭넓게 봐서 거시적 관점의 개선대책이 더 많이 언급되기를 바랍니다. 입법 차원에서 봤을 때, 아동법과 형법, 성폭력처벌법, 성폭력피해자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성폭력범죄 처벌 규정”이 하나의 법체계 내에서 일관되게 정리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벌 이외에 다양한 관점에서 해당 문제행동을 줄어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면 더 의미 있는 연구 보고서가 될 듯합니다. 끝으로 최근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현장조사를 통해 꼼꼼하게 탐구해주시고, 그 핵심 문제점을 정리해 주신 연구자님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후속 연구를 기대하며 다시 한 번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 공동 세미나 토론문

김현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터넷 뉴스를 통해 연일 알려지는 사건들을 보면, 불법촬영물의 가해자가 너무나 다양하고 가해행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전 지역 초등학교 교사 2명이 각각 독서실과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일반인 여성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적발돼 직위 해제됐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서 중·고등학교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몰래카메라 영상과 사진이 SNS를 통해 퍼지고 있다”, “몰래카메라를 △△ 주민센터의 여자 화장실에 설치해 여성 직원과 민원인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공무원 32살 A씨를 붙잡았는데, 올 3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불법 동영상을 390여 개, 300GB(기가바이트) 분량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등의 기사들은 불과 며칠 사이에 우리에게 알려진 사건들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결국 일상이 깨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최근 청와대에 참여인원 208,543명으로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한다”는 청원이 종료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불법촬영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오늘 발제자들께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제시한 개선과제들에 동의합니다. 불법 촬영과 유포가 새로운 성폭력의 유형으로 인식되면서 이에 대한 처벌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규정되어 있지만, 범죄 기술의 발달과 범죄 유형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처벌 공백이 발견되고 나서야 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화상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여, 14세)에게 유방, 음부 등 신체부위를 보여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화상카메라에 비추자, 피고인이 컴퓨터 화면 속의 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동영상 파일로 저장한 사건에서, 「성폭력처벌법」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도4279판결).

그리고 피해자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거울에 비친 자신의 나체를 촬영한 후 그 사진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나체 사진을 전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2항의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뜻하는 것임이 문언 상 명백하므로,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까지 위 조항 소정의 촬영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고 판단하여, 본인이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5도16953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불법촬영에 따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처벌법」으로 포섭되지 못하는 처벌공백들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음란물 유포죄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회하여 처벌한다면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폭력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국선 변호사가 지원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제16조제2항에서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 역시 적용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조속히 관련 개정안들이 통과되어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가해자들이 처벌받기를 바랍니다.

최근 각 정부기관에서도 불법촬영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발제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현재 피해 촬영물에 대한 수사와 삭제의 경우 기관별로 별도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신속한 피해자 구제에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속한 삭제입니다. 따라서 각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한 공조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일원화된 서비스 제공 및 기관 간 협조 시스템을 강화된다면, 피해자의 피해 구제가 신속해 질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그 피해 회복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한 번 유포된 후에는 아무리 삭제해도 재유포의 위험성을 완벽히 막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예방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 있도록 이 범죄 특징에 알맞은 예방교육이 필요하고,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의 홍보를 통해 피해자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 공동 세미나 토론문

최종상 과장(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최종상 총경입니다.

오늘 디지털성범죄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증지를 모으는 자리에 경찰을 대표한 토론자로 참여하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경찰의 추진 정책과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 ‘불법촬영 편파수사 시위’ 관련

서승희 대표님의 ‘불법촬영 편파수사 시위의 의미와 과제’ 발제 관련, 경찰청 앞에서 시위가 진행되었을 때 배포하신 자료들은 저희 사이버수사과 직원 전부가 읽어보았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경찰이 그간 웹하드 유통 플랫폼이나 카르텔이라는 디지털 성범죄의 큰 숲을 보는 것을 놓치고 유포사건 개개에 치중했던 것은 아닌가...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이러한 반성적 성찰의 견지에서 경찰은 지난 8월 13일부터 ‘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단속 100일 계획’을 시작하여 이제 4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특별단속의 목표는 불법촬영물 유통 구조의 완전한 근절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에서 지적해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불법촬영물 유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음란사이트 216개, 웹하드 30개, 헤비업로더 ID 257개, 커뮤니티사이트 33개 총 536개 집중 단속대상을 비롯한 유통 플랫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뿐만 아니라 플랫폼 운영자 등과 유착한 디지털장 의사·필터링업체·배너 광고업자 등 유포행위를 조장하는 유통카르텔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단속을 위해 사이버수사과·수사과·성폭력대책과·피해자보호담당관 등 6개 관련 기능이 역할을 분담하고 협업하는 ‘사이버성폭력특별수사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특별수사단 내 사이버수사과에 수사상황실을 두고 536개 집중 단속대상 등에 대해 현장에서 책임수사가 이뤄지도록 지도·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간의 단속 성과

단속 24일차인 9월 5일 기준으로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둔 음란사이트 32개(23명 검거, 구속 5명)와 웹하드 2개, 헤비업로더 ID 52개(22명 검거, 구속 2명)을 검거하였으며, 다른 집중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관련법 상 처벌 조항이 높지 않아 법 집행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 등에 대한 징벌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 및 미과세 소득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국세청 통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 경찰청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님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어느 변호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처럼 “불법촬영물 유포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모든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에서 이 두 가지를 꼭 검토하도록 체크리스트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100일 계획이라고 하니 “100일만 지나면 단속 안하냐”, “이 소나기만 피하면 다시 불법촬영물 유포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100일은 상징적으로 경찰의 강력한 근절 의지를 보여주자는 측면일 뿐 단속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 수사 관련

거의 모든 음란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이 집중단속대상으로 삼은 216개 음란사이트들도 서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 약 155개(72%) 사

이트가 미국의 서버 대여 서비스업체인 ○○○○사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한 결과에 따라 미국 ○○○○사에 대해 음란사이트 운영자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며, 해당 업체에서는 미국 법원의 영장을 제시할 경우 운영자나 유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겠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HSI*와 공조하여 위 음란사이트들에 대하여 함께 수사하고 영장 발부 받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 美 국토안보부 수사청(HSI,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 美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 수사기관으로, 미군 용산기지내 한국지부 사무실이 있으며 한국이 관련된 주요 형사사건을 담당. 테러방지·전략물자·마약거래·인신매매·사이버범죄·아동성매매·미국비자범죄 등 담당

이 공조수사가 잘 이루어지면 집중 단속대상의 72%에 대한 검거와 그에 따른 사이트 폐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불법촬영물을 음란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이트에 대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존재 여부에 대해 철저히 채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건화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31일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주관으로 국제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도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이 회의에 전 세계 59개국, 5개 국제기구 및 외국 법집행기관 소속 377명 등 총 1,133명이 참석하여 원활한 국제공조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도 미국 측과 수사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 경찰의 피해자 보호 방지 노력 관련

불법촬영물과 유포범에 대한 수사와 함께, 불법촬영물에 대한 즉각적인 삭제·차단 등 2차 피해 방지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피해신고를 위해 찾아온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어 유포된 불법촬영물에 대해 개별사이트에 대한 삭제·차단을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을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와 함께 일이 늘어나는 것이지만 경찰서를 찾아온 피해자가 다른 기관에 여러 차례 가도록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삭제·차단과 관련하여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가 직접 이 기관들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여기 계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최은희 국장님과도 9월 5일 뵙고 유의미한 협의를 했

습니다. 그간 해외 음란사이트에 대하여 URL 방식으로 차단을 해왔는데 DNS 방식으로 차단을 해보기로 협의하였고, 과잉 차단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에서는 해당 음란사이트에 대한 면밀한 수사로 불법성을 입증하여 차단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 **불법촬영물 재유포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이하 성특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을 적용하는 것 관련**

온라인상에서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경우 성특법이 아닌 정통망법을 적용한다는 지적과 관련, 많은 현장 경찰관들은 수사 시 처벌이 더 무거운 조항으로 의율하여 수사하고 싶어합니다. 다만 성특법으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불법촬영물이라는 입증이 잘 되어야 하는데, 경찰이 성특법으로 의율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도 기소 단계에서 정통망법으로 죄명 변경되는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일례로 BJ 등 촬영 영상의 경우 배포에 대한 피촬영자의 의사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통망법을 의율하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법촬영물인지 아닌지는 경찰이 더욱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선 경찰들이 피해촬영물의 구체적인 정황, 유포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성특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강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저도 오늘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하면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촬영물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야겠다는 의지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하고 잘 검거해도 처벌이 약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얻는 이익보다 처벌이 더 커야 합니다. 경찰의 단속·검거가 실효성이 있도록 불법촬영물 유포 등에 관한 처벌이 강화되거나 법 망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성특법 등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 공동 세미나 토론문

최은희 국장(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국)

■ 입법조사처 보고서 개선과제 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책 추진방안

① 신속 심의방안 필요

- ▲ 위원회의 단축된 심의기간 2~3일도 피해 최소화에는 한계
- ▲ 위원회는 '선 조치, 후 심의' 프로세스를 통해 신속한 삭제 조치 필요
- ▲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심의 절차 축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4기 위원회 출범('18.1.30.) 후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적극 대응하고자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부서인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신설('18.4.16.)하였고, **주 3회 회의 개최**(통신심의소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를 통해 **상시 심의체계를 구축운영**('18.4.25.~)하고 있음.
 - 그 결과, 심의소요 기간이 전년 대비 **대폭 단축**('17년 10.9일→현재 3.2일)됨.
- 또한, 심의 및 시정요구 전, 사업자에게 **자율적인 先삭제 조치(자율조치)**를 요청하고 있음.

〈디지털성범죄정보(불법촬영물 등) 자율조치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1.1. ~ 8.31.)
자율조치	1,100건	7,309건	4,665건

※ 다만, 보고서에서 제안한 '先 시정요구 조치, 後 심의' 절차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유통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함.
 - 이에, 대면 회의구성에 따른 **절차적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전자심의를 통한 상시 심의체계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검토** 중임.

- 또한, 전담팀을 신설하기는 하였으나, 7~8인의 직원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신속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바, 신속심의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 확대·신설도 검토 중에 있음.

※ (가칭) ‘디지털성범죄종합대응센터’에 ▲ ‘기획상담팀’(기획, 법률, 상담), ▲ ‘심의대응팀’(심의), ▲ ‘사후지원팀’(모니터) 등 3개 팀 구성

2) 해외 불법정보 차단을 위한 기술적 개선조치 마련

- ▲ 우회 프로그램이나 보안 프로토콜(https)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 한계
- ▲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기술적 방안 마련 필요

- 이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안 프로토콜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SNI 필드 차단 방식¹⁾을 올해 말 도입을 목표로 하여 ISP(정보통신망사업자)와 협의 중에 있고, 우리 위원회도 접속차단 기술 고도화를 위한 실무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음.
- 이와는 별도로, 우리 위원회는 국내 사업자에게 디지털성범죄 동영상 해시값 DB를 제공하여 국내에서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있으며,
 - 연말에는 원천 차단할 수 있는 ‘DNA 필터링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디지털성범죄 영상 해시값 DB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8.31.)
해시값	306건	275건	373건

3) 해외 사업자와의 협력 강화

- ▲ 근본적 섣다운 조치가 아닌 접속차단 방식의 일시적 효과 한계
- ▲ 해외 사업자와의 자율규제 협력 방안 모색 등

- 접속차단 방식의 근본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해외 사업자에게 불법정보 자율조치(삭제)를 요청하고 있음.

1) 보안접속(https) 시에도 암호화 되지 않는 영역인 SNI 필드에서 차단 대상의 서버 네임을 특정하여 차단하는 방식

-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는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텀블러와는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촬영물, 아동음란물, 성매매 정보에 대해서는 자율조치를 적극 요청하고 있음.

○ 해외 유관기관사업자와의 MOU 체결 및 주기적 협력회의 개최 등 국제 공조 시스템 구축 및 협력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국제 공조활동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가칭) '국제협력실' 신설 검토

4 지속적인 모니터링 한계

▲ 위원회의 한정된 인력으로 장기간 지속적 모니터링 어려움

○ 위원회는 현재 3인의 전문모니터 요원으로 2016년부터 사후 모니터링을 통하여 불법촬영물 피해자 구제 강화에 힘쓰고 있음.

〈디지털성범죄정보 사후모니터링 시정요구 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8.31.)
사후 모니터링	4,389	1,886건	4,929건

※ '17년 감소는 제3기 위원회 임기 만료('17.6.12.) 이후, 4기 위원회 출범('18.1.30.)까지의 심의 공백에 기인함.

○ 하지만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정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으로, 향후 인력 증원 예산확보 시 전일제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운동을 추진할 계획임.

- 중장기적으로는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등 기술적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 다만, 이를 위해서는 인력이나 예산 확보가 불가피한 바, 국회나 사회 각계각층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5 피해자 구제 일원화를 위한 유관 기관과의 공조 강화

- ▲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경찰 수사와 위원회 삭제 역할의 연계성 부족
- ▲ 위원회와 민간단체 간의 업무 협력 네트워크 미비
- ▲ 여성가족부 산하의 삭제지원 담당 기관은 정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 ▲ 경찰청은 위원회와 업무협력체계 구축하여 정보 등 공유

- ▲ 불법포르노사이트 대응을 위한 위원회의 기술이 개선되고 디지털성범죄 대응팀의 역량 강화 필요
- ▲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과 체계적인 민관 협력 강화 필요

- 위원회와 경찰은 작년 ‘불법정보 공조시스템’을 시범 구축하여 심의요청-수사의뢰 하는 등 신속하고 원활한 협조체계 토대를 마련하였고,
 - 현재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올 연말 구축 완료 예정)
- 여가부 피해자 지원센터(여성인권진흥원)와는 증거자료 확보 등 효율적인 신고방법 논의를 위해 여러 차례 업무협의를 하였고, 한사성 등 민간단체와도 협력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예정임.
- 디지털성범죄정보의 특성상 원천적으로 차단근절하기 위해서는 일원화된 대응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 위원회와 관계 부처(방통위·법무부·여성가족부 등) 및 수사기관(검찰청·경찰청) 간의 유기적 협업 및 공동 대응과 상호 역량 강화를 위해 상호 인적교류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⑥ 여가부 불법촬영물 삭제 등 권한 부여

- ▲ 장기적으로 여성가족부는 위원회의 삭제 및 차단에 관한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

□ 합의제 내용심의 원칙에 배치

- 인터넷 정보의 불법성 여부 판단은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들 간의 합의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를, 여가부 독임제 장관의 단독심의에 맡길 경우 졸속 판단의 부작용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가부가 직접 심의하지 않고, 산하기관에 위탁 운영할 경우에도 불필요한 기관 신설, 국가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 행정기관의 내용 검열 비판 직면

- 또한, 여가부가 인터넷 내용을 직접 심의할 경우 행정부에 의한 검열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적규제는 민간 독립기관이 수행해야 함.

□ **시정요구 통보 창구 일원화 필요**

- 이용자와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 인터넷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권한이 각 행정부처로 분산될 경우, 이용자·사업자에게 혼란만 가중될 수 있음.**
 - 불법촬영물은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어, 위원회는 ‘접속차단’ 대상 URL 목록을 ISP에 주기적으로 통보하고 있음.
 - 위원회와 별도로 여가부 통보 시 **중복목록이 발생할 우려가 크며, ISP의 목록 관리로 인한 불필요한 업무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 (※ 위원회는 매년 ‘접속차단’ 목록을 현행화 하는 작업을 실시 중)

□ **위원회 직접심의를 통한 피해자 측면의 구제 강화**

- 피해자들은 자신의 직접적 노출을 극도로 꺼려하며, 가해자의 처벌이나 상담보다는 정보 삭제를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아래 통계에서 보다시피(직접신고가 유관기관 신고보다 약 2배 많음), 피해자들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기관을 통한 삭제보다는 위원회에 직접적인 삭제요청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더불어, 면대면 또는 전화 등의 **상담이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의 홈페이지 접수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됨.**
- ※ 여가부 피해자 지원센터는 전화상담, 게시판(비공개) 상담 등으로 진행하고 있음.

〈디지털성범죄정보 인지방법별 심의 현황〉

(기간: '18.1.30.~7.16. / 위원회 보도자료 인용)

구 분	합 계	일반인 신고	유관기관, 시민단체 신고	자체인지 (모니터)
심의 건수(%)	6,852(100)	2,817(41.1)	1,526(22.3)	2,509(36.6)

* 유관기관 : 여가부 피해자 지원센터(여성인권진흥원), 경찰, 시민단체 등

■ **기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위원회 주요 정책 추진방안**

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제도적 대응 실태조사**

- 위원회는 해외 주요 국가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국내와 비

교·분석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심의제도와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자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현황
- 해외 각국의 디지털 성범죄 실태 조사 및 관련 법제도, 규제현황 조사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해외와 국내의 대응 실태 비교 분석을 통한 국내 법제도 개선방안 및 심의 시사점 도출 등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에서 해당 연구과제 수행 중)

② 국제 컨퍼런스 개최(12월 중)

- ‘디지털 성폭력과 인권(가제)’을 주제로, 디지털 성폭력의 효율적 규제 방안과 국제협력 및 공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추진하고 있음.
 - <세션 1> 디지털 성폭력의 실태와 대응
 - <세션 2> 디지털 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③ 디지털 성범죄를 주제로 한 공익광고 제작

- 위원회에서는 하반기에 디지털 성범죄를 주제로 한 공익광고를 제작할 예정임.
 - 위원회에서 제작하는 공익광고와는 별개로, 중장기적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잠재적 가해자나 피해자, 이용자가 될 수도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심각성과 폐해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 및 캠페인 전개**가 필요함.
-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나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아래의 호주의 사례와 같이 국가와 사회가 피해자 관점에서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바라보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가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디지털 회복 탄력성**’에 중점을 두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됨.

〈호주 인터넷안전위원회²⁾(eSafety Commissioner)가 피해자에게 조언하는 내용³⁾〉

1. 신고한다.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온라인 신고 양식을 사용하여 인터넷안전위원회에 신고한다. 인터넷 안전위원회가 당신의 상황을 평가할 것이고, 경찰과 같은 다른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당신에게 용기를 주기도 한다.
2.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한다. 기억해라. 누구나 성적 착취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당신은 혼자 아니며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다.**
3. **패닉에 빠지지 않는다.** 대신에 걱정스럽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신뢰할 만한 친구나 가족들의 지원 그리고 전문 카운슬링 지원 서비스에 연락을 취한다.
4. 돈을 주지 않는다. 그들에게 절대 돈을 주지 말고 사진을 더 보내지도 않는다.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사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다.
5. 가해자와 모든 연락을 끊는다. 그들을 차단하고 당신의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해줄 것을 요구한다. 소셜 미디어 계정을 일시적으로 비활성화하는 것을 고려한다.(그러나 증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삭제하지는 않는다)
6. 증거를 모은다. 가해자로부터의 모든 접촉을 기록해 놓는다. 특히 요구나 협박 그리고 당신이 가해자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기록해 놓는다. 여기에는 Skype 이름 및 ID, Facebook URL 및 MTCN(Money Transfer Control Number)이 포함될 수 있다. 인터넷안전위원회 홈페이지의 증거 수집방법을 보고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살펴본다.
7. 자신의 계정을 보호한다. 당신의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당신 계정의 개인 정보 및 보안설정을 검토한다.
8. 관련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알린다. Skype, YouTube 또는 사용된 앱 또는 소셜 미디어 서비스에 알린다. 인터넷안전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학대 사례를 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링크를 찾을 수 있다.

2) 호주 통신과 미디어국(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하위의 독립 법정 사무국

3)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기획세미나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18.8.24.) 중 정소영(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발제 내용〈호주의 디지털 성범죄 대처방안 검토〉에 수록된 내용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 공동 세미나 토론문

변혜정 원장(한국여성인권진흥원)

□ 디지털 성폭력의 개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양식이 위계적인 젠더 구조에 매개되어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의미에서 기술매개 젠더기반폭력(Technology-Facilitated Gender Based Violence)이라고 할 수 있다.

□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과 적용법률

모든 디지털 성폭력이 현행법상 성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범죄로 규정되는 디지털 성폭력은 성적 목적을 위한 불법 촬영,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이 있다.

유형	적용 법률	
촬영물 이용 성폭력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유포, 재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3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재유포)
	유통 소비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3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유포협박	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명예훼손죄 제310조 형법 모욕죄 제311조	

□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

사회 구조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몰카', '호기심', '국산야동' 등 사소한 범죄로 여겨짐 - 웹하드, 성인 사이트 같은 유통 플랫폼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는 상황 - 불법 촬영물 생산·유통·삭제 행위들이 각각 수익을 창출하며 서로 결합하여 카르텔을 구성함 - 재유포 우려로 피해 사실을 밝히기조차 어렵고, 디지털 성폭력 전문지원시설이 부족함
피해자·가해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성범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발생하고, 삭제 후에도 범죄가 다시 발생(재생산 및 재유포)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와 큰 차이가 있음. 피해자는 유포 현장과 유포물을 다시 대면해야 한다는 점에서 범죄 현장에 끊임없이 노출되는 것 같은 트라우마를 경험 - 피해자 대 가해자의 관계가 1대 다수인 경우가 많으며, 영상을 다운로드하고 댓글을 다는 행위 등 익명의 무수한 가해자가 존재 - 남성도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나 같은 유포 피해를 입어도 여성 피해자에 비해 피해 정도나 규모가 적어, 성별에 따라 피해 양상이 다름 - 불법 촬영물을 소비하는 문화가 만연해 가해자에 대한 비난이 적음 -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으나 촬영에는 동의한 경우 '순결한 피해자'로 인정받기 어려움 - 피해 발생 인지가 불명확한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으로 인해, 실제 성폭력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불안을 호소할 수 있음
범죄 구성과 재판 과정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촬영, 유포, 재유포 시점 등 사건 발생 시점이 각기 다르며,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르기 때문에 수사 및 삭제지원이 가능한 내용도 달라짐 -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2차 피해가 유발될 수 있음 - 유포 위험에도 불구하고 촬영기기 압수, 추가적인 촬영물 수색 등의 초기 대응이 미흡한 경우가 많음 - 현행법상 성폭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자 권리 보호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온라인 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조건만남, 존강간, 스토킹, 주거공공장소 침입, 데이트 폭력, 데이터 성폭력 등 오프라인의 성폭력과 밀접한 관계 - 대부분의 불법 촬영물 유포 플랫폼에서 최음제와 같은 불법 약물, 도박, 성매매 알선 등 불법 광고가 함께 게시됨 - 피해 영상 삭제 및 채증을 위한 전문적 기술이 요구됨(DNA 필터링, 해시값 등)

□ 디지털 성범죄 사례

사례1) 비동의 촬영 및 비동의 유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남자친구가 잠든 사이 나체를 촬영 • 헤어진 이후 100여장이 유포됨 • 피해물을 최근에 발견함 • 사건 발생 시점과 인지 시점이 다름 • 타인을 통해 인지하는 경우가 다수 • 영상이 편집되어 시리즈물/스토리물 형태로 유포되기도 함
사례2) 유포 협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인관계였을 때도 피해자를 감시, 스토킹 • 피해자가 헤어짐을 요구하자 연인관계일 때 촬영에 동의했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 피해자에 대한 성적 모욕과 인신공격을 주변 사람들에게 퍼트리려고 다짐 • 여성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소비하는 문화를 이용한 협박 • 유포를 막을 수 있는 완벽한 대응책은 없음 • 추가적인 피해 촬영물을 얻어내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의 2차 피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가해자와의 연락이나 관계를 단절하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포 협박시 비동의 촬영일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항도 적용되나, 촬영에는 동의했을 경우 협박죄에만 해당
<p>사례3) 성적 사진 합성 (일명 지인 능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스타그램 등에 올린 셀카 사진을 불법, '○○고교 1학년 김○○, 겔x로 유명' 등 성적으로 모욕하는 허위사실과 게시 • 주로 10대에게 발생 • 사진 자체가 성적으로 합성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가 사소하다고 할 수 없음
<p>사례4) 몸캠피싱 및 유포협박, 비동의 유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S 채팅 중 나체 사진을 계속 요구하여 사진을 상대방에게 전송 • 가해자가 다운로드하라는 파일이 해킹파일이었고, 피해자의 핸드폰 번호 및 저장된 사진 등을 해킹 • 해킹된 자료로 유포협박을 했고, 금전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수집된 번호로 친척과 지인에게 나체사진을 유포

□ Q & A

Q1 디지털 성범죄 매개물(몰래 찍힌 사진, 몰래 유포한 영상 등)을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도 죄가 되나요?

Q2 촬영에 합의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었어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인가요?

Q3 완벽한 삭제가 가능한가요?

Q4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Q5 꼭 가해자를 신고해야 하나요?

Q6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어떡하죠?

Q7 아주 오래 전에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도 신고가 될까요?

Q8 과거에 유포한 가해자를 신고하고 영상(사진)을 삭제했는데, 또 유포되었어요. 삭제 지원이 가능한가요?

Q9 해외 사이트는 어떻게 삭제요청을 하나요?

Q10 웹하드의 경우 어떻게 삭제지원을 하나요?

Q1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지향점과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요?

□ 플랫폼 및 유포 관련 용어 설명

DMCA :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촬영자는 저작권을, 출연자는 저작권 접권을 가지며 온라인 서비스 기업은 배포권 등의 권리 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미국 법

원본 소스 : 동영상이나 사진의 원본이 존재하는 URL(주소). 성인 사이트의 경우 원본은 따로 존재하고 스트리밍(재생) 방식이 많아 원본을 찾아 삭제해야 함

P2P : Peer-to-Peer, 중앙서버 없이 컴퓨터와 컴퓨터 간을 연결하여 쌍방향으로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토렌트 : P2P 방식의 파일 전송 프로토콜 및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모두 지칭하는 것. 하나의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사용자끼리 공유하는 방식으로, 성인인증, 회원가입 등의 절차가 없어 불법 자료도 쉽게 공유할 수 있으며 추적이 어려움

웹하드 :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처럼 데이터나 파일 등을 저장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저장 공간. 현재는 업로더-업체-다운로더 사이에 포인트를 주고받으며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주로 지칭함. 국내에는 약 60여개의 웹하드가 있으며, 포인트 시스템 때문에 한 번 삭제되어도 다시 유포될 가능성이 많음

아카이브 : 특정 페이지의 모든 내용을 박제하듯이 저장하는 사이트. 이미 삭제된 페이지의 내용도 열람할 수 있으며 삭제요청에 잘 응하지 않음

검색 결과 삭제 : 원 페이지나 콘텐츠는 삭제되었으나 검색 엔진에서 검색 결과 및 썸네일 등이 남아있는 경우 삭제를 요청하는 것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 공동 세미나

